

13.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64호 1997.12.31

주 요 골 자

- 가. 지금까지는 대손총당금의 손비인정한도가 금융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말 현재 채권잔액의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중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을 지원함(법 제19조제3항).
- 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정하고, 입축기장총당금 또는 일시상각총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여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함(령 제23조의4).
- 다. 지금까지는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함(령 제25조).
- 라. 법인세법의 계정으로 2002년부터는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중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특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손비부인기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손비부인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정함(령 제43조의2제17항).

마.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는 기밀비의 한도가 자기자본의 1퍼센트와 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44조의2제1항).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18호)됨에 따라 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은행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하고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